

감사원

심사결정

분류번호 2017-심사-11

제목 요양급여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 □□주식회사(대표이사 A)
서울특별시 ■■구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노무사 B, C

처분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 D(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6. 3. 21. 06:40경 “▲▲ 연구공간 확충 민자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¹⁾에서 체조하러 가다가 철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있은 후 같은 4. 12.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염좌”를 진단받아 같은 해 4. 19.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1) ●●시 소재

재해조사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6. 7. 26.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의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용역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이 사건 재해의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는 2015. 7. 1. 이 사건 공사 관련 ‘건설 현장 내 호이스트²⁾ 운전, 호이스트 설치, 주변 각 출입부 청소 및 정리정돈, 각 층 입구 정리정돈’ 용역업무를 수

2)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기계장치

행하는 도급계약(계약금액: 호이스트 운전원 1인당 월 1,950,000원)을 맺었고, 재해자는 2015. 9. 18. △에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조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쟁점사항에 대한 재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자 등의 진술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

구분 (작성자)	내용	날짜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 (재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 21. 아침 6시 40분경 아침 체조하러 가다가 바닥에 박혀있는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깔아둔 돌멩이에 두 무릎을 들이받아 이 사건 상병 발생 ▶ 재해자는 △ 소속 사원으로 호이스트 조작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출근 후 안전교육 및 체조하는 장소로 걸어가다가 자갈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E과 F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 	'14. 4. 12.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산재보험관계도 사업서비스업으로 성립되어 있고, 재해자의 호이스트 조작업무는 호이스트라는 기계장치를 작동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별도의 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함 ▶ 청구인은 △에 일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매월 19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고, 재해자는 □□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등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어 원수급자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음 ▶ 재해자가 아침조회 시간인 6시45분, 출근시간인 7시 이전인 6시 40분에 출근 중 사업장과 명백히 구분되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16. 5.

목격자 진술서 (동료근로자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재해자의 동료 근로자며 재해자가 근무시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면 조치를 취했을텐데 재해자는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모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함 	'16. 3. 23.
목격자 진술서 (동료근로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 21. 같은 회사 소속 D씨가 아침에 조회 장소로 걸어 오던 중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목격, 재해자가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억 	'16. 3. 23.
목격자 진술서 (동료근로자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 21. 같은 회사 소속 D씨가 아침에 조회 장소로 걸어 오던 중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목격 	'16. 3. 27.
조사복명서 (처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가 청구인의 공사장 내에서 체조를 하러 가다 자갈바닥에 있는 철사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자갈바닥에 좌측 무릎이 충돌한 사고 ▶ 재해자는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전조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 파견이라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하수급자인 재해자 소속 회사 간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여 원수급자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함이 타당 	'16. 7. 18.
재해조사서 (처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가 2016. 3. 21. 아침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 현장소장 및 담당자 면담, 용역 위탁계약서 등 제출자료, 신청인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신청인의 업무가 건설외벽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운행하는 업무 외에 호이스트 내부 청소, 호이스트 설치주변과 각 출입부 입구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수행하였고, 다른 하청업체와 함께 현장사무실을 두고 건설 현장의 동일위험권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 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상 △가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세워 종업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의 비용과 책임으로 종업원을 지도·감독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등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의 지도·감독은 건설 현장 원수급자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관리감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사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원수급자인 청구인이 재해자의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판단되고, 또한 재해자의 사고장소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있던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됨 ▶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재해경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요양승인하고, 좌측 슬관절내측인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 결정 함 	'16. 7. 26.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의무기록지 (▷▷정형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원일시: 2016. 3. 21. 17:47▶ 주 증상: 발목 무릎 통증▶ 주차장 자갈밭에서 외이어에 걸려서 넘어짐▶ 진단명: 좌측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16. 3. 21.
진단서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병명: (좌측)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슬관절 (좌측)내측족부인대의 염좌, 슬관절▶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병명으로 가로 중인 환자로서 합병증 등이 병발되지 않은 한 수상후 약 4주간 가로후 재진 요할 것으로 사료됨	'16. 4. 12.
자문의 소견서 (처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의사 조성도: MRI상 ①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관찰되나 ②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염좌는 확실치 않음 ① 상병만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있을 수 있음▶ 자문의사 전용진: 재해경위 명확하다면 후방십자인대 손상 가능함. ①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확인되어 타당하며, ②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염좌는 명확하게 관찰되지 아니함	-

4)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두 차례 진료³⁾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2010. 11. 1.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의원), 2013. 6. 27.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의원)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한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시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재해조사서와 목격자 진술서(동료근로자: F, E) 등을 통해 재해자가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사 현장 아침조회 장소에 체조를 하러 걸어가다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자가 진술한 사고경위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부상경위가 일치하는 점, ②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재해자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 소속 근로자가 청구인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호이스트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와 맺은 위탁계약서에 △가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세워 종업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도·감독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계약의 명칭이나 내용이 도급계약으로 확인되고, ② 실제 △가 다른 하청업체와 함께 건설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호이스트 운전업무 외에도 호

이스트 내부 청소, 호이스트 주변 및 각 출입구 청소, 정리정돈, 각 층 입구 정리 등
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이 이행된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3.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죄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